

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

김유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(ymkim@kiep.go.kr, Tel: 3460-1075)



차 례 ●●●

1. 최근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강화 배경
2. 주요 내용 및 평가
3. 전망 및 시사점

주요 내용 ●●●

- ▶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강화함.
 - 인도네시아의 전 품목 가중평균 최혜국대우(MFN) 실행관세율은 2.4%(2009년 기준)로 주변국인 말레이시아(5.1%)와 베트남(6.8%)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인 한국(7.9%)보다도 낮음.
 -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하였으며 전체 350건 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(TBT)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8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(2012년 기준).
- ▶ 최근 강화된 비관세장벽은 △ 수입자 인증요건 강화 △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 항구 축소 및 검역 강화 △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제 강화 △ 광물자원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 강화 △ 등나무 원목 수출규제 등임.
 - 수입제도에 대한 규제강화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임.
 -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가공시설 설립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따름.
- ▶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제도가 급변함에 따라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내에 자원민족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 - 2014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결탁된 정책담당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식의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음.
- ▶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자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.
 - 한국-인도네시아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전담부서가 인도네시아 내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,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.
 - 이 외에 기존의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에서 TBT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R&D 및 양자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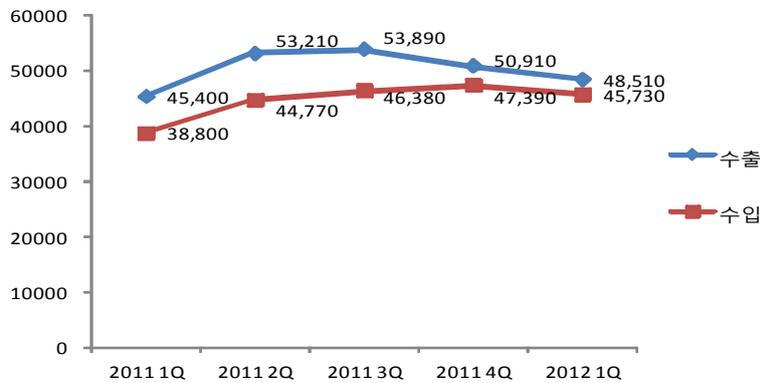
1. 최근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강화 배경

■ 최근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는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려가 보호주의 정책으로 나타난 것임.

- 인도네시아의 2012년 1/4분기 수출액은 4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.9% 증가하였으며, 수입액은 4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.9% 증가함(그림 1 참고).

그림 1. 최근 인도네시아 분기별 수출입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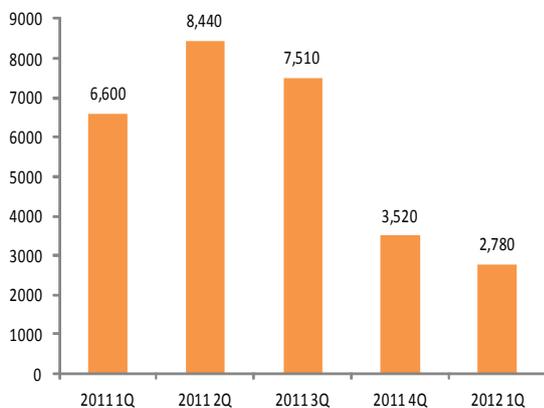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-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누계기준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6,44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.13% 증가하였으며, 수입액은 6,236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.18% 증가함.

-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며(그림 2 참고),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악화됨(그림 3 참고).

그림 2.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무역수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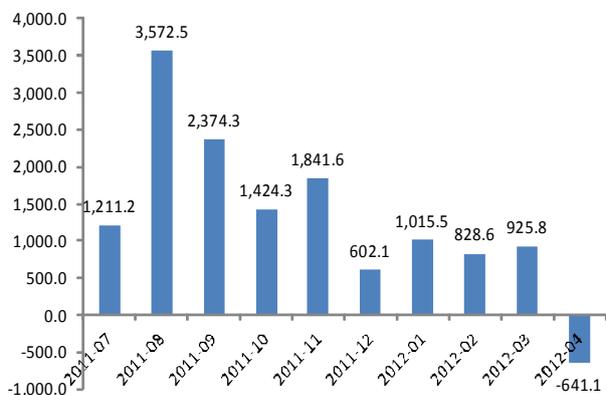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그림 3. 최근 인도네시아의 월별 경상수지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CEIC, Indonesia Premium DB.

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도입함.

- 인도네시아의 전 품목 가중평균 최혜국대우(MFN) 실행관세율은 2.4%(2009년 기준)로 주변국인 말레이시아(5.1%)와 베트남(6.8%)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인 한국(7.9%)보다도 낮음(표 1 참고).

표 1. 인도네시아의 최혜국대우(MFN) 실행관세율 현황

(단위: %)

국가	구분	단순평균	가중평균
인도네시아	농업	8.4	3.4
	제조업	6.6	2.2
	전품목	6.8	2.4
말레이시아	농업	10.9	14.4
	제조업	7.6	4.3
	전품목	8	5.1
베트남	농업	17	8.8
	제조업	8.7	6.6
	전품목	9.8	6.8
한국	농업	48.5	99.8
	제조업	6.6	3.5
	전품목	12.1	7.9

자료: WTO(2011).

-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함(표 2 참고).

- 2012년 기준 전체 350건 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(TBT)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8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.

표 2.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(NTMs) 현황

품 목	부가세/ 과징금	물품세	비자동 수입허가	자동허가 조치	수입 할당	수입 금지	선적전 검사	독점적 수입채널	TBT	라벨링/상 표/포장 등	검사	계
동물제품			1			1			19	1	2	24
식물제품			2	5			1	2	10		3	23
가공식품 등	13	7	33	1	1	1		4	41	45		146
광물성제품			2		1		1	2				6
화학공업품			7		1	24		3	5	3	1	44
플라스틱/고무			1			1						2
목재·목제품									1			1
종이·펄프						4						4
섬유제품			1	37		1						39
신발 등			1	5								6
비금속제품			3									3
일반기계			3	7		1	1					12
전기기계			2	6		3	1					12
수송기계	4		11						4			19
광학기기				1								1
잡제품			1	3			1					5
기 타	2										1	3
계	19	7	68	65	3	65	5	11	80	49	7	350

자료: ASEAN 사무국 비관세장벽 데이터, USTR의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.

2. 주요 내용 및 평가

가. 수입제도

- 2012년 6월 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업체에 대한 인증요건을 강화한 무역부장관령 제27호를 발표함.
 - 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입업체는 제조업수입자 인증번호(API-P: Angka Pengenal Impotir-Produsen) 혹은 일반수입자 인증번호(API-U; Angka Pengenal Impotir-Umum)를 취득해야 함.
 - 현지 제조공장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API-P와 API-U로 구분되며, 수입업체는 둘 중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.
 - 제조업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API-P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투자청(BKPM)으로부터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.
 - 21개 그룹으로 분류된 수입품목(표 3 참고) 중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API-U가 필요하며,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동반되어야 함.
- 2012년 6월 1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농업부장관령 제15호를 통해 과실, 채소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입통관 항구를 축소하고 검역을 강화함.
 - 이 규정에 따르면 과실, 채소 같은 신선농산물 수입 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원산지 및 경유지 표기와 검역증명서가 동반되어야 함.
 - 특히 수입통관 지역이 기존의 8곳에서 4곳(Makassar 항구, Surabaya 항구, Medan 항구, 자카르타 국제공항)으로 축소됨.
 - 이 외에도 방역을 위해 모종 형태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함.

표 3. 수입품목 분류

구분	HS Code	품목	구분	HS Code	품목
1	0101~0511	산동물, 동물성 생산품	12	6401~6704	신발류 · 모자류 · 우산 · 지팡이 · 조제우모 · 인조제품
2	0601~1404	식물성 생산품			
3	1501~1522	동물성 · 식물성 유지; 식용 처리된 유지	13	6801~7020	석, 시멘트, 석면제품
4	1601~2403	조제식료품; 음료; 주류; 식초; 담배	14	7101~7118	귀석, 반귀석, 귀금속
5	2501~2716	광물 제품	15	7201~8311	선철 · 스피그라이즌 · 비금속제 등 비귀금속 제품
6	2801~3826	각종 화학공업 생산품	16	8401~8548	전기기기, TV, VTR
7	3901~4017	플라스틱과 그 제품; 고무와 그 제품	17	8601~8908	철도차량, 일반차량, 항공기, 선박 등 탈것
8	4101~4304	원피, 가죽, 모피, 모피제품	18	9001~9209	광학, 의료, 측정, 검사, 정밀기기
9	4401~4602	목재, 목단, 코르크, 짚, 조물재료의 제품	19	9301~9307	무기
10	4701~4911	펄프, 지와판지, 서적, 신문인쇄물	20	9401~9619	잡품
11	5001~6310	견사 견직물	21	9701~9803	예술품, 골동품

자료: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 2012/ 27호

■ 2011년 농업부장관령 제24호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제를 강화함.

- 이 규정에 따르면 축산품은 검역소 외에도 농업부 산하 축산보건협회의 승인 및 추천을 받아야 수입이 허가됨.
- 이 규제안에 따라 2012년 초에 일시적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바 있음.
 - 미국무역대표부(USTR)의 『2012 무역장벽보고서』에 따르면, 상기 규정안으로 인해 미국의 대(對)인도네시아 수출이 연평균 약 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.

나. 수출제도

■ 2012년 5월 1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장관령 제23호를 통해 65개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관세 20% 도입과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을 강화함.

- 규제대상인 65개 광물자원은 금속광물 21종, 비금속광물 10종, 광석 34종으로 석탄은 수출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(표 4 참고).
 -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석탄은 희귀광물이 아니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출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.
- 또한 65개 광물자원의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도 더욱 복잡해지고 엄격해짐.
 - 광물자원 수출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업사업허가권(IUP: Izin Usaha Pertambangan) 외에 도급(KK: Kontrak Karya) 계약서와 용광로 건설에 관한 사업제안서가 추가로 필요함.
 - 이 외에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추천서 및 무역부의 승인이 필수사항으로 요구되면서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짐.

표 4. 수출세 부과대상 광물자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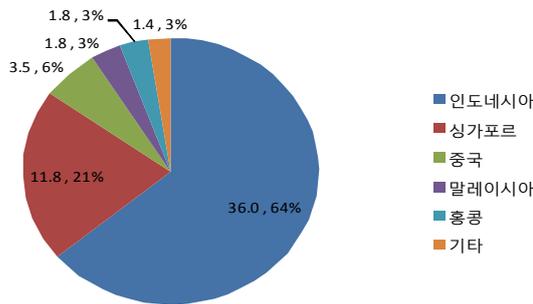
번호	품목	번호	품목	번호	품목	번호	품목
1/2	황/철광석	16	안티몬	30	공업용다이아	44	반려암
3	응결된 철광석	17	코발트	31	다이아몬드	45	감람암
4	하소된 황철광	18	아연	32	석류석	46	현무암
5	망간	19	티탄철광	33	점판암	47	응회암
6	구리	20	티타늄	34	대리석 원석	48/49	단백석/가공 단백질
7	니켈	21	지르코늄	35	대리석	50/51	칼세도니/가공칼세도니
8	알루미늄	22	석영	36	대리석판	52/53	규질암/가공규질암
9	납	23	규암	37	오닉스	54/55	벽옥(원석)/가공벽옥
10	몰리브덴 원석	24	고령토	38	진주암	56/57	녹옥수/가공녹옥수
11	기타 몰리브덴	25	석회암	39	변형 진주암	58/59	1차/2차 가공석류석
12	크롬	26	장석	40	화강암	60/61	마노/가공마노
13	은	27	규산지르코늄	41/42	화강암/판형	62/63	황옥/가공황옥
14/15	금/백금	28/29	제오라이트/파우더	43	화강섬록암	64/65	옥/가공옥

자료: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 2012/29호.

-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정부령 24호를 발표하면서 외국인의 광물기업 지분율을 축소시켜 광물자원 부문에 대한 장벽을 더욱 높였음.
- 외국계 광물기업은 생산 시작 후 5~10년 안에 전체 기업지분의 51%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또는 내국인에 양도해야 함.
- 이 외에 2011년 제정된 무역부 법령 제35호가 2012년부터 발효되어 등나무 원목 수출이 금지됨.
- 이는 정부가 등나무 가공품 수출을 통한 인도네시아 국내 가구산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.
 - 201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등나무 수출액은 약 3,600만 달러로 전 세계 등나무 수출의 64%를 차지하고 있음 (그림 4 참고).
 - 누계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등나무 생산량은 2004년에 급증한 이후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임(그림 5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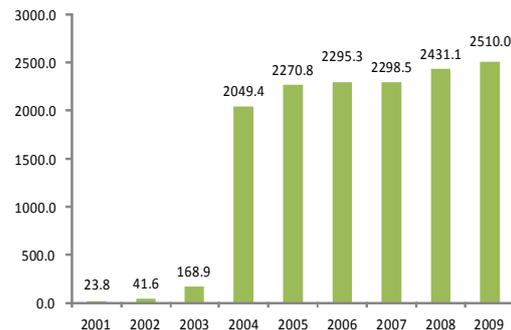
그림 4. 2011년 국가별 등나무 수출비중

(백만 달러, %)



자료: UN comtrade.

그림 5. 인도네시아 등나무 생산 현황(누계기준, Kt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산림부(2011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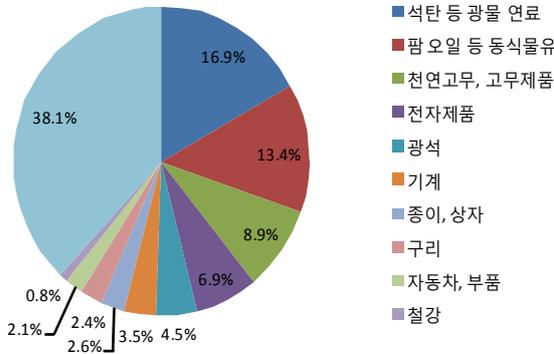
다. 평가

- 수입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임.
- 국내 중소기업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무역부장관령 제27호에서는 ‘최종재’ 인 수입품은 통관을 금지하고 ‘보완재’ 와 ‘시제품’ 만 수입을 허가함.
 - 2011년 수입급증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현지 중소기업체들이 2010년 무역부장관령 제39호¹⁾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,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자²⁾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함.

1) 2010년 무역부장관령 제39호에 따르면 생산업자가 인도네시아 투자청 등 공인된 기관에서 사업허가를 취득할 경우 최종재 수입이 허가됨.
 2) 대법원은 이 규정이 “생산업은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을 위한 생계수단이 되어야 한다”라는 인도네시아 헌법 제14조 33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함.

그림 6.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현황(201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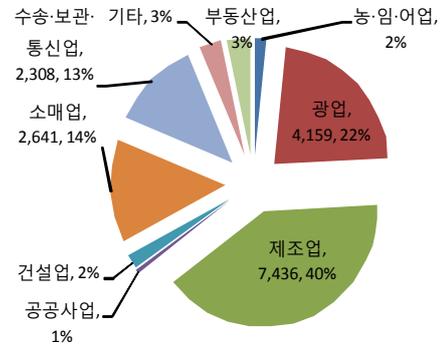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그림 7. 인도네시아 업종별 FDI 비중(2011년)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■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정제소 설립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.

- 2011년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, 에너지 관련 생산품³⁾이 전체 수출량의 46.9%를 차지하고 있음(그림 6 참고).
- 2011년 업종별 FDI를 살펴보면, 광업이 41억 6천만 달러로 전체 금액의 22%를 차지함(그림 7 참고).
-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제품 및 투자업종의 다양화와 함께 광물 관련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.

3. 전망 및 시사점

가. 전망

■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 원자재 수요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규제 강화로 관련업계의 사업위축이 예상됨.

- 2012년 1~4월 간 인도네시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, 천연고무 · 광석 · 유기화학물 등 원자재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(표 5 참고).
-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련업계의 5월 매출은 약 1억 달러 감소함.
- 많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향하였으나 스탠더드앤amp;퍼어스(S&P)는 인도네시아 투자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라 '투자적격' 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음.

3) ISIC 코드 10-12, 23.

표 5. 인도네시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(누계기준, 전년동기대비)

번호	주요 품목(HS)	2011년(1~4월)	2012년(1~4월)	증가율(%)
1	석탄 등 광물원료(27)	7,404	9,292	25.5
2	팜 오일 등(15)	5,663	7,523	32.8
3	천연고무 등(40)	5,062	3,597	-28.9
4	전자제품 등(85)	3,505	3,559	1.5
5	기계류(84)	1,646	1,984	20.5
6	광석(26)	2,343	1,882	-19.7
7	화학제품(38)	1,155	1,227	6.2
8	목재(44)	1,017	1,173	15.3
9	신발(64)	1,013	1,096	8.2
10	유기화학물(29)	1,243	961	-22.7
11	기타	19,971	18,856	-5.6
총 계		50,024	51,152	2.3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- 인도네시아 내 자원민족주의⁴⁾가 만연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감축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- 2014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결탁된 정책담당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식의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음.
 - 2011년 말 인도네시아 정부는 처칠 사(Churchill Mining)의 광물개발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2014년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 전 군부장관 소유의 현지기업에 양도함.

나. 한국에 대한 시사점

-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자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.
- 2012년 1월부터 4월 사이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수출액은 31억 700만 달러에 달하며, 수입액은 약 27억 6,6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-2.6%, 18.3%의 증가율을 보임(표 6 및 표 7 참고).

표 6. 인도네시아 주요 국가별 수출량 (2012년 1~4월)

국가	수출액(백만 달러)	증가율(%)
중국	7,035	35.3
일본	5,739	-1.5
미국	4,798	-8.4
싱가포르	4,284	19.7
태국	3,297	-9.6
한국	3,107	-2.6
말레이시아	2,269	-10.6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표 7. 인도네시아 주요 국가별 수입량(2012년 1~4월)

국가	수입액(백만 달러)	증가율(%)
중국	9,093	21.9
일본	7,722	34.3
미국	3,566	11.4
싱가포르	3,502	3.7
태국	3,568	2.3
한국	2,766	18.3
말레이시아	2,066	17.8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4) E&I가 발간한 『Business risks facing mining and metals 2012-2013』에 따르면, 자원민족주의가 광물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임.

-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CEPA 체결을 앞두고 양국간 교역량을 오는 2015년까지 500억 달러, 2020년까지 1,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운 바 있음.
- CEPA 체결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더라도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경우 양국간 무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따라서 양자간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의체를 설립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.
 - o 기존에 한·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비관세장벽을 의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음.

■ 인도네시아의 수입제도 변화에 따라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관련 기업들이 복수의 인증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데 추가비용이 필요하고,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수입물품 가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
-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(KOCHAM)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(WTO) 규정에 위배되는지 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.
- 따라서 한국정부는 전담부서가 전무한 현지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조사하고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.

■ 수출제도 변경과 함께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원자재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.

- 최근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무역분쟁 사례를 통해 전략적인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드러남.
 - o 세계 제2위의 니켈 소비국인 일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자원 정제소 건립을 의무화하자 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.
 - o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가스 최대수입국인 일본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규모를 감축한다고 선언함.
 - o 일본의 광물기업인 미쓰이 사(Mitsui&Co.)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,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광물자원 공급국이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전함.
-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다각화된 접근이 요구됨.
 - o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구리의 원료인 동광 수입액은 2011년 기준 약 12억 5천만 달러로 전체 동광 수입량의 22.3%를 차지함.
- 한국정부는 원자재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, 기존의 비관세장벽에서 TBT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R&D 및 양자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. **KIEP**